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24호 2016. 2. 17. (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1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14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6
거창군 조례 제2315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거창군 조례 제2316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31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거창군 조례 제231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거창군 조례 제2319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199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거창군 규칙 제120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7
거창군 규칙 제1201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9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24호 2016. 2. 17. (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1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14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6
거창군 조례 제2315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거창군 조례 제2316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31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거창군 조례 제231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거창군 조례 제2319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199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거창군 규칙 제120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7
거창군 규칙 제1201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9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94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6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17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70
거창군 고시 제2016 - 1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7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165호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5
거창군 공고 제2016 - 18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고 98
거창군 공고 제2016 - 190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295 293	14	128	65	63	49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292 290	14	100	37	63	47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278 276	11	94	33	61	43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3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현행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1. 30. ~ 12.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4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생 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u>생년월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u>생년월일</u>-----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생년월일을</u>-----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u>자로</u>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2. (생 략)</p> <p>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④ (생 략)</p> <p>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 ----- ----- -----<u>사람으로</u>-----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람</u>-----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람</u> 4. ----- ----- --<u>사람</u>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수당 등) ----- ----- -----<u>범위에서</u> ----- -----</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5px;">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div>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거 창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거창군수 귀하</p>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거창군수 귀하				
<p>※ 붙임서류 : 관련 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4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항 변경함(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란 설명” 삭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4조)

○ 자 ⇒ 사람

라. 지번 요구 사항을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5호서식)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0. ~ 1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5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군민안전보험)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u>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사업의 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p><u>제5조의2(군민안전보험)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p>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의2(군민안전보험)제1항

: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 정 욱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6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7호)
 -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인증 공인 기간 만료('15. 3월)
- 나.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의2)
 -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16년도 예산 25,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23. ~ '16. 1. 1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6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제16조의4----- ----- -----</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u>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u>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p> <p>② ~ ⑤ (생략)</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거창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란 생략)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④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p>「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u>제16조의4</u>제6항 및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거창군수 직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5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별지 제1호·제7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12.07. ~ 12.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7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7조 제목 “(요금 등의 감면)”을 “(요금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2와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공업용수</u>”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p> <p>10. ~ 11. (생략)</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생략)</p> <p>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p> <p>2. (생략)</p> <p>② <u>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 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u></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u>100분의 3</u>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p> <p>-----<단서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34조(가산금)----- ----- ----- -----100분의 2-----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p>

현행	개정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p> <p>2.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p> <p>2.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p> <p>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p> <p>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p>
<p>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49조(이의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제49조(이의신청) ①----- ----- ----- -----<단서 삭제></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u>수수료</u>, <u>과태료</u>,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 -----<u>수수료</u>----- ----- -----</p>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개정안	현행
가정용	1 ~ 20	<u>610</u>	530
	21 ~ 30	<u>810</u>	700
	31이상	<u>1,060</u>	920
일반용	1 ~ 30	<u>760</u>	665
	31 ~ 50	<u>920</u>	800
	51 ~ 100	<u>1,070</u>	930
	101 ~ 300	<u>1,230</u>	1,070
	301이상	<u>1,380</u>	1,200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u>710</u>	620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 액 (원)	
	개정안	현행
13	<u>860</u>	750
20	<u>2,430</u>	2,110
25	<u>3,900</u>	3,390
32	<u>6,950</u>	6,040
40	<u>11,720</u>	10,190
50	<u>17,970</u>	15,630
75	<u>43,600</u>	37,910
100	<u>74,340</u>	64,640
150	<u>161,970</u>	140,840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정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 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화 승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08
----------	-----------

제출연월일	2016. 1. 2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요금 납부방법 개선,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안 별표 2, 별표 4)

- 업종별 사용료 15퍼센트, 구경별 기본요금 15퍼센트 인상률 반영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별표 7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 ~ 3급)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나.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32조의2)

-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다.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34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라. 규제 삭제함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안 제45조, 별표 5)
 -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준용 내용 삭제(안 제49조제1항 단서)
 - 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조항에서 “과태료” 용어 삭제(안 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표준급수조례」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16년도 예산 7,746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10. ~ 12.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 추가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별표 1,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조(가산금)----- ----- ----- ----- 100분의 2-----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개정안	현행
가정용	1 ~ 20	<u>130</u>	101
	21 ~ 30	<u>180</u>	136
	31 이상	<u>240</u>	182
일반용	1 ~ 30	<u>160</u>	120
	31 ~ 50	<u>200</u>	153
	51 ~ 100	<u>240</u>	186
	101 ~ 300	<u>280</u>	215
	301 이상	<u>340</u>	265
산업용	1톤당	<u>160</u>	120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8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

- 하수도 사용료 30퍼센트 인상률 반영(안 별표 1)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26조, 별표 7)

나. 규제 완화함

-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16조의2)
 - 요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29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10. ~ 12.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9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6월 20일”을 “6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6월 20일</u>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일) ① ----- <u>6월 10일</u>----- ----- ----- -----</p> <p>② ----- -----</p> <p>③ ----- ----- -----</p>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07
----------	-----------

제출일자	2016. 1. 27.
발 의 자	이성복 의장 외 10명

1. 제안이유

○ 현행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20일로 정해 놓고 있으나 2016년 7월 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겹치면서 의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6월 10일로 변경.

○ 전년도 예산결산검사는 조기 실시 가능.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해 2월에서 12월 말로 당겨짐)

2. 주요내용

○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 6월 1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부 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2016.1.11. ~ 1.18.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조례 제2319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6월 20일”을 “6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6월 20일</u>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일) ① ----- <u>6월 10일</u>----- ----- ----- -----</p> <p>② ----- -----</p> <p>③ ----- ----- -----</p>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07
----------	-----------

제출일자	2016. 1. 27.
발 의 자	이성복 의장 외 10명

1. 제안이유

○ 현행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20일로 정해 놓고 있으나 2016년 7월 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겹치면서 의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6월 10일로 변경.

○ 전년도 예산결산검사는 조기 실시 가능.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해 2월에서 12월 말로 당겨짐)

2. 주요내용

○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 6월 1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부 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2016.1.11. ~ 1.18.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안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규칙 제1199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제안의 접수) ① ~ ② (생략)</p> <p>③ 접수된 제안이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민원 사항이거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u></p>	<p>제3조(제안의 접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안의 보완) ① ----- ----- ----- ----- -----</p> <p>② ----- ----- -----<u>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u></p>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퍼센트)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퍼센트)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퍼센트)		비고		
제안개요					
포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 뒤쪽 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02
----------	-----------

제출연월일	2016. 1. 04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 흠결 있는 제안을 일정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제안을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이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흠결 있는 제안서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안 제4조제2항)

(현행) 제안자가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개정안) 이미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2. 10. ~ 12.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제1호·제8호서식 성별란 추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규칙 제120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109
----------	------------

제출연월일	2015. 12. 1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6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6급(증1) : 87명 → 88명(행·농·녹시 1)

나. 일반직 6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사업소 6급(감1) : 11명 → 10명(행·세·사·농 -1)

다.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 95명 → 96명(행·사·시 1)

라.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사업소 7급(감1) : 15명 → 14명(행·사·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0. ~ 1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규칙 제1201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를 “조례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을 “하수도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계속 제1항의”를 “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한다.”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2호·제8호·제10호·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처리기한 7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
시공장소					
공사내용					
급수시설	구경	m/m	모터펌프	대	그 밖에
배출량	생활하수	m ³ /일	사업장 폐수	m ³ /일	
<p>「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서						처 리 기 한 7 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				
	배출시설					
	배 출 량	일평균		m ³	월평균	m ³
<p>「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p>첨부서류 : 1. 입증서류 및 관련법규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도면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p>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06
----------	-----------

제출연월일	2016. 1. 04.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제안이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를 확대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대상 및 분납횟수 개선함(안 제12조)

- 대상 : 공사기간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1억원 이상
⇒ 원인자부담금 4천만원 이상
- 횟수 : 3회 ⇒ 4회로 확대함

나.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23. ~ '16. 1. 1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개선의견 반영(별지 서식에 성별란 추가함)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2월 17일

거창군 훈령 제394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5 ~ 110
----------	------------

제출연월일	2015. 12. 1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정원변동 없음(안 별표)

- 산림녹지과 : 행·농·녹·시 6급 증1
- 도시건축과 : 행·사·시 7급 증1
- 체육청소년사업소 : 행·세·사·농 6급 감1, 행·사·시 7급 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거창군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상면 희랑생활체육공원(서편,진입도로)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6. 02. 17.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체육공원)사업
- 명 칭 : 주상면 희랑생활체육공원(서편,진입도로) 조성공사

3. 사업의 개요

1)교통시설:도로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고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시설: 도로	주상	도평	소로	2	278	317	9.0	주상면 도평리 797-1 일원	거창군 고시 제2015-89호 (2015.7.16)	

2)공간시설:공원

가)총괄조서

종류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행규모 (㎡)			최 초 결정일	비고
				공원면적	시설면적	녹지		
공간 시설 (공원)	희랑생활 체육공원	체육 공원	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일원	11,425	5,662	5,763	거창군 고시 제2015-89호 (2015.7.16)	-

나)세부조서

구 분	세부시설 결정면적 (㎡)	금회시행 (㎡)	비 고
합계	11,425	11,425	
시설계	5,662	5,662	○공원면적 대비 시설면적 비율:49.6% ○시설면적 대비 운동시설 비율:71%
도로 및 광장	434	434	
휴양시설	- (과고라3개소)	- (과고라3개소)	
운동시설	4,020	4,020	
편익시설	1,208	1,208	
녹 지	5,763	5,7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6. 02.
- 준공 예정일 : 2018. 0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6,116.8	15,497					
1	주상면 도평리	1127-27	천	1,814	56		국토교통부			공원
2	"	1127-25	천	2,974	353		국토교통부			공원
3		1253	구	1,411.4	627		농림축산식품부			공원
4		1127-68	천	203	203		국토교통부			공원
5		1225	답	2,065.4	2,065.4		거창군			공원
6		1226	답	1,279.2	1,279.2		거창군			공원
7		1227	답	3,817.4	3,817.4		거창군			공원
8		1228	답	1,218.6	1,218.6		거창군			공원
9		1229	답	1,769	1,769.0		거창군			공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0		1230	답	36.4	36.4		국토교통부			공원
11		740-2	천	218	187		경상남도			도로
12		1127-16	천	1,471	22		국토교통부			도로
13		1127-17	도	57	27		국토교통부			도로
14		1127-27	천	1,814	713		국토교통부			도로
15		1127-75	천	2,974	2,041		국토교통부			도로
16		1127-28	계	392	100		국토교통부			도로
17		1127-29	계	558	69		국토교통부			도로
18		741-2	천	569	108		경상남도			도로
19		1253	구	1,411.4	16		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0		797-2	전	16	3		경상남도			도로
21		741-1	천	707	191		경상남도			도로
22		744-2	천	807	81		경상남도			도로
23		744-1	천	1,064	198		경상남도			도로
24		754-2	천	329	94		경상남도			도로
25		754-10	천	64	43		경상남도			도로
26		754-11	천	198	30		경상남도			도로
27		753-6	천	157	8		경상남도			도로
28		753-5	답	26	5		경상남도			도로
29		754-8	답	414	15		경상남도			도로
30		753-1	답	86	40		거창군			도로
31		754-9	답	45	33		거창군			도로
32		562-1	도	6,151	48		국토교통부			도로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녹색환경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1978.04.20.)로 최초 결정되고 거창군 고시 제2015-81호(2015.07.02.)로 최초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 02. 17.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 시설: 도로	군계획시설(소로2-83호선)사업	거창	중앙	소로	2	83	48	8.0	거창읍 중앙리 2-6 ~ 거창읍 중앙리 5-3	경고103호 (78.4.20)	경미한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진 산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81, 102호(지엔지시티)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5. 7.
- 준공 예정일 : 2016. 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6,856	405					
1	거창읍 중앙리	5-3	답	120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7길13, 라동 202호(무지개아파트)	이진산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3	거창읍 중앙리	480	천	2,291	159		국(건설부)			
4	거창읍 중앙리	4-9	도	2,292	94		거창군			
5	거창읍 중앙리	2-6	도	2,153	79		거창군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거창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행정신뢰도 제고
-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으로 불일치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제1조(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 조례 제2조(정의) : 야생동물 및 농작물 등 용어 정의

- 조례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출기준 마련
- 조례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를 명확화
- 조례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 명확화
- 조례 제12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기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비율은 지원금 60% 이하, 자부담금 40% 이상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건당 300만원 지원기준 마련
- 조례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 유해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하여 포획 보상금을 지급 근거 마련

4. 소요예산 : 217백만원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녹색환경과)

○ 전화 : 055-940-3492, 팩스 : 055-940-3759,

이메일 : mkleee69@korea.kr

붙임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거창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개정(안) 1부.

3. 「거창군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 붙임 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p> <p>1. “야생동물”이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p> <p>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p> <p>3. (생략)</p> <p>4. (생략)</p> <p>5. “피해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p>	<p>제2조 (정의)</p> <p>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제5호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p>
<p>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 (적용범위)----- --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가----- -----농업인 등에 -----</p>
<p>제4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p> <p>②농작물의 피해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p>	<p>제4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 ----- ----- ----- 산출하며, 산림작물의 경우에는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p> <p>②농작물 등의-----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u>피해농업인에게</u>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u>피해농업인 등에게</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 (시행규칙) ----- -----</p>
<p>(신설)</p>	<p>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p>(신설)</p>	<p>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 관내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 3.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2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기준)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비율은 지원금 60% 이하, 자부담금 40% 이상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건당 300만원으로 한다.</p>
(신설)	<p>제13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유해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보상범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작물 중 피해 대상 농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농작물 및 화훼, 비료작물, 특용작물(더덕, 인삼 등), 산채류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용작물 : <u>벼,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메밀,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등</u> 2. 공예작물 : <u>참깨, 들깨, 담배, 목화 등</u> 3. 원예작물, <u>오이, 고추, 토마토, 생강, 무, 배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등</u> 4. 사료작물 : <u>클로버, 옥수수, 오차드그래스 등</u> 5. <u>균이작물 : 버섯작물</u> 6. <u>뽕나무</u> 	<p>제2조(보상범위) ----- ----- 보상 대상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등 2. 산림작물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산림버섯, 산채류 등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p>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1조 (시행세칙) ----- -----</p>
<p>(신설)</p>	<p>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조례 제11조 및 12조의 피해예방시설 중 설치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8조(피해예방시설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마을단위 또는 3농가 이상 공동 설치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신설)	<p>제9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p> <p>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p> <p>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0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p> <p>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p>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신고인	관리번호	제 호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사유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매매·임대차 등 관리주체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2>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녹색환경과)

(제정) 2004.10.13 조례 제1721호

(전부개정) 2005.11.10 조례 제1769호

(일부개정) 2006.12.28 조례 제1828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11.07 조례 제2057호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3호 거

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제5호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란 농업인이 직접 재배·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4. “인명피해”란 농업인이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피해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 ① 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림작물의 경우에는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②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피해보상액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작물별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예산범위 초과, 중복지원 등으로 피해보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 ① 피해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농작물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 절차)

-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피해농업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영세농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 ① 피해농업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

농업인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거창군 관내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
3.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12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기준)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지원비율은 지원금 60% 이하, 자부담금 40% 이상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건당 300만원으로 한다.

제13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획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10 조례 제 17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2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규정) 제3조제1항은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11.11.07.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3.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녹색환경과)

(제정) 2006.06.27 규칙 제 986호

(일부개정) 2008.01.14 규칙 제1012호

(일부개정) 2011.11.07 규칙 제1095호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

제 2조 (보상범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상 대상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 작 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등
2. 산림작물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산림버섯, 산채류 등

제3조(보상요령)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 합산
2. 동일한 피해농업인의 피해농지가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합산
3.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피해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각각 적용
4.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
5. 과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재식면적을 적용하여 산정
 - 가. 배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
 - 나. 사과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일반형은 1주당 8㎡, 밀식형은 4㎡ 적용
 - 다. 복숭아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17

m², 일반형은 8m² 적용

라. 단감 : 1주당 18m² 적용

마. 포도 : 1주당 8m² 적용

바. 자두 : 1주당 62m² 적용

사. 매실 : 1주당 55m² 적용

6. 과수를 제외한 농작물 피해는 실측하여 산정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2011.11.07개정)

제 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읍·면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 입증은 피해농업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 작물별 피해를, 생육단계별 비율,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피해농작물 중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락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 6조 (이의신청)

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조례 제11조 및 12조의 피해예방시설 중 설치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8조(피해예방시설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마을단위 또는 3농가 이상 공동 설치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9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1.07. 규칙 제 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을 위반한 우리 군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

거 창 군 수

1. 공고대상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대상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하나에너지	홍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3 상가 110호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부산강서2009-24-01)	시정명령 (주기적신고 미이행)	2016. 02. 11.

- 공고기간 : 2016. 02. 17. ~ 2016. 03. 02.(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이행
- 미이행시 처분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받게 됨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거창군세 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까지 감면

나.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내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33**, fax 940-3219 또는 거창군청 페이지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입법 / 공고 / 고시란 (<http://www.geo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2016. 2. .
제 출 자	재 무 과 장

<p>1. 제안이유</p> <p>○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일부조례 규정의 미비(법령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및 지연반영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p> <p>○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가. 16조문(중전 조례) ⇒ 10조문(전부개정조례 안) 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내 대한 감면(안 제5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p>나. 보칙 제11~제18조/ 부칙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안), 다른 조례와 관계</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p>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다. 합 의 :</p> <p>라.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예고기간: 2016. 2 17. ~3. 8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분석의뢰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창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는 최초의무가 성립하는 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은 최초의무가 성립하는 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균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 중략 ...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

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중략 ...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1.1.>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하략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